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직권검사와 유통 점검

부정 · 불량농약 유통 방지로 농업인 보호

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발취 · 분석, 최근 5년 합격률 98%이상으로 우수농약 유통 시 · 도간 교차 합동단속 실시, 친환경농자재 농약적 효과 광고 등 집중 단속

일 반적으로 품질관리는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제품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기하기 위한 관리 또는 각종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는 관리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가장 시장성이 높은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 조치로서 소비자 요구에 맞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 ·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설계 · 제조 · 판매 · 서비스 등 각 단계에 체계적인 관리수법을 종합적으로 응용 · 활용하는 것이며 통계학을 품질관리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근대적 품질관리로서의 통계적 품질관리(statistical quality control:SQC)가 대두되었고 현재는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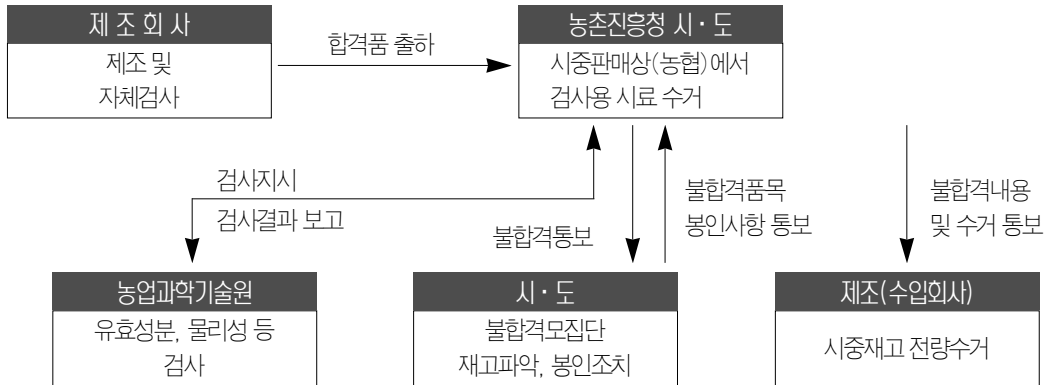
오 홍 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품질을 포함하는 종합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control:TQC)가 요구되고 있다.

직권검사와 유통점검

농촌진흥청에서 농약관리법에 의해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 수행하고 있는 직권검사는 철저한 품질관리로 양질의 농약을 공급하고 부정 · 불량농약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사용자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매년 농약사용 성수기 이전에 시중에서 집중적으로 발취하여 분석함으로써 성분함량에 문제가 없는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농약을 발취하여 분석을 실시하는데 매년 1,000여점 내외를 수거, 분

〈 유통농약 품질검사 체계 〉



석하고 있다. 중점 검사품목으로는 100모집단 이상 다량 생산품목, 품질관리 취약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불합격 농약과 약효, 약해 등 민원발생 농약, 수입완제품 농약, 신규로 등록된 농약 및 신규 등록업체에서 생산된 품목과 제조처방을 변경하여 생산한 농약을 중점적으로 발취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시중에서 농약을 발취하여 분석한 결과 합격률은 98%이상으로 우수한 농약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통단속사항으로서 우리청과 시·도간 교차 합동단속 등을 연 8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자재를 농약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하는 사례나 무등록·밀수입 농약 등 부정농약은 사범경찰권을 적극 활용하여 그 제조원을 추적하는 등 발본색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권검사 분석 결과

매년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전국을 대상으로 농약품목을 발취하여 분석한 결과 해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전체 발취품목수를 기준으로 0.9%에서 1.4%의 불합격율을 보이고 있다. 원인별로는 주성분 미달이 매년 10건 내외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성분함량의 평균 미달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1년 95.1%, 2002년 94.1%, 2003년

〈 농약 품질검사 결과 〉

(단위 : 점)

연도	검사계획	검사건수	합격건수	합격률(%)
'01	900	913	900	98.6
'02	900	956	944	98.7
'03	950	1,000	991	99.1
'04	980	1,021	1,007	98.6
'05	1,000	1,016	1,002	98.6

〈 불합격 건수 및 사유 〉

(단위 : 건수)

연 도	주성분 미달 (비율)	물리성 불량 (비율)	고독성농약 주성분허용범위초과(비율)	합 계
'01	11 (84.6)	2 (15.4)		13
'02	12 (100)	-	-	12
'03	9 (100)	-	-	9
'04	10 (71.4)	2 (14.3)	2(14.3)	14
'05	9 (64.3)	2 (14.3)	3 (21.4)	14

96.9%, 2004년 94.8%, 2005년 94.1%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51건 각각에 대한 미달율을 조사한 결과는 평균 5.1%로 48건이 10%이내였으나 10%이상인 경우도 3건(15.0%, 14.3%, 12.2%)이 있었다.

또한 분말성 불량 등 물리성 불량과 주성분함량이 기준량의 10%이상 초과(고독성농약에 한해서만 규제)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유통 점검 결과

전국의 농약시판상과 농협을 대상으로 부정·불량농약은 물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계도와 함께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시 주의사항도 병행하여 계도함으로써 올바른 농약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5년간 농협을 포함한 시중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농약인 무등록 농약이나 밀수입농약을 취급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반품하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도 많았다. 또한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법규위반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총 적발건수는 2002년 이후 90건 내외 이었다.

〈 농약관리법 위반내역 및 적발건수 〉

위 반 내 역		적 발 건 수					비 고
		'01	'02	'03	'04	'05	
부정농약	무등록, 밀수입 농약	2	5	4	5	3	
	표기사항 위·변조	-	1	1	1	-	
	개포장 또는 분포장				1		
불량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21	46	53	56	52	
	포장지 표시사항 훼손농약				1		
법규위반	판매업 미등록		2	3	2		
	취급제한기준 위반	6	40	19	20	39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19			3	4	
	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		4				
계		48	98	80	89	98	

유통 점검시 적발 대상

□ 부정농약

농약관리법상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다)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동물 : 달팽이, 조류 또는 야생동물, 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농약은 첫째 농약 품목으로 등록하지 않은 농약, 둘째 외국에서 밀수입한 농약, 셋째 농약이나 표기내용을 위·변조하여 판매하는 농약, 넷째 외관상 정상품 같이 보이나 내용물이 표시내용과 다르거나 애매 모호한 농약적 표현과 과대선전으로 판매하는 약제 등을 말한다.

무등록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농약제조(수입)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농약이나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농약품목등록이 안된 약제(물질)로서 농약관리법 제2조 농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포장지의 라벨 또는 광고문에 표기한 농약을 말한다. 표시사항 미표시 농약은 농약의 명칭, 품목등록번호,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병해충명, 약효보증기간 등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농약을 말하며 판매업자가 고의로 제조업자가 제조한 농약의 포장을 바꾸거나,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약은 개·분포장하여 농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농약으로 부정농약에 해당되며 단속의 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 부정농약의 유형 〉

- 농약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농약
- 농약으로 품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
- 폐지된 품목의 농약
- 수입업 등록 없이 밀수입한 외국산 농약
-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위·변조)로 표시한 농약
- 개·분포장한 농약

□ 불량농약

불량농약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시중에 출하한 농약이 운송, 보관, 취급 중에 용기나 포장지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이나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 직권검사결과 불합격 품목과 동일 모집단 농약 등을 말한다. 이러한 농약을 보관하거나 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농약의 품질관리 검사 결과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불합격)된 농약은 이를 봉인한 후 수거 또는 폐기토록 되어 있다. 또한 자체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도 불량농약이다.

□ 기타 단속 대상

인력, 장비, 시설 등의 기준에 따른 판매업을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방제업자, 기타 농약사용자는 농약을 안전사용 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취급하여야 한다. Y